|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감독관리방법**2001년 9월 30일 해관총서령 제89호로 공표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령 제218호로 개정 **제1장 총칙****제1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송수화인이 해관수속을 처리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해관 감독관리 화물로서 별도의 규정(첨부1 참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출입 화물은 보세운송 수속 처리가 가능하다. 해관은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에 해관 봉인표지를 부착하여 감독관리한다.**제3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해관에서 등기절차를 행한 운송업체가 운송해야 한다. 해관이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운송노선, 운송기간을 지정한 경우 운송업체는 해관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해관은 업무수요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을 압송할 수 있으며 해관이 압송하는 경우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 운송인은 규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고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운송 목적지와 출발지는 해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감독관리 장소로 정해야 한다.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보관, 하역, 검사는 해관 감독관리 장소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특수사유로 해관 감독관리 장소 이외의 기타 장소에서 보관, 하역,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미리 해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해관은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제5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에 대한 검사는 목적지 또는 출발지의 해관이 실시한다. 출·입국지 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6조** 해관의 허가 없이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을 해체, 인수, 인도, 발송, 교체, 리모델링, 저당권 설장, 질권 설정, 유치, 양도, 표지 교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제7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 세가지 방식으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1) 목적지 또는 출발지 해관에서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한다.(2) 입국지 또는 출발지 해관에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해관 신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직접 처리한다.(3) 국내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국지 또는 출발지 해관에서 일괄 신고하는 중계 방식으로 처리한다.**제8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를 위해 제출한 전자문서와 종이서류는 그 법률효력이 동등하다. 작성 또는 전송 상의 착오로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신고된 경우 수출입 화물 해관신고서 수정 및 철회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수정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해관이 검사를 결정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철회를 금지한다.광둥성(廣東省) 내 도로 운송 시의 <입국 차량 적화목록>(첨부2) 또는 <출국 차량 적화목록>(첨부3)은 보세운송 신고서류로 간주하며 법률효력을 갖는다. **제9조** 입국지 해관이 특수사유로 사전신고한 보세운송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게 된 경우 직접신고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해관의 관할지역에서 다른 해관의 관할지역으로 운송되는 해관 감독관리 화물은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감독관리 방식에 따라 감독관리한다.**제11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을 운송하는 도중에 교통사고 등 사유로 운송용구 또는 운전사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전사는 이 사실을 인근지역 해관에 통보해야 한다. 인근지역 해관이 사실 조사 후 교체를 동의한 경우 환적을 감독관리함과 더불어 교체 사실을 입국지, 목적지 해관 또는 출국지, 출발지 해관에 서면통보해야 한다. **제12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국내 저장·운송 중에 파손, 수량부족, 멸실된 경우 운송인, 화주, 저장장소 책임자가 조세 책임을 부담한다. **제2장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감독관리****제13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입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고 해관이 한정한 기간내 및 목적지 해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목적지 해관에서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을 넘긴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 지체금을 부과한다. **제14조**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에 대해 목적지 해관에 도착한 날의 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사전신고 화물의 경우 입국지 해관의 보세운송 정보가 목적지 해관에 전달된 날의 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운송 도중에 세율과 환율이 대폭 조정된 경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목적지 해관에 도착한 날의 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5조**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입국지 해관에서 수입화물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수입화물 해관 신고서> 전자데이터를 목적지 해관에 제출한 후 전자신고가 목적지 해관에 의해 접수처리 되고 화물이 목적지 해관이 감독관리 하는 장소에 도착한 후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물량정산(核銷, 거래증빙과 실물을 대조확인하여 기록을 정리하는 통제과정을 말함.), 서류 접수 및 통관검사 등 수속을 처리한다. **제16조**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목적지 해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수입화물 해관 신고서>는 저산 스시템을 통해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첨부4 참조)를 자동적으로 생성 및 입국지 해관으로 전송된다.**제17조**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 번호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국지 해관에 제출하여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1)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통행허가서>(첨부5 참조). 광둥(廣東)성 내의 육로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입국 차량 적화목록>을 제출한다.(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경내 해관 감독관리 화물 운송차량 적화 등기부>(이하 <차량 적화 등기부>로 약칭) 또는 <선박 감독관리부>.(3) 선하증권.**제18조**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전자데이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이 경과될 때 까지 입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 한 경우 목적지 해관은 사전신고 전자데이터를 취소한다.**제19조**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국지 해관 전산시스템에 보세운송 신고 데이터를 등록하여 보세운송 수속을 직접 처리한다.**제20조**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국지 해관에 제출하여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1)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첨부5 참조). 광둥(廣東)성 내의 육로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입국 차량 적화목록>을 제출한다.(2) <차량 적화 등기부> 또는 <선박 감독관리부>.**제21조** 통과운송선하증권 보유 및 경내 운송용구로의 환적이 필요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수화인과 그 대리인이 목적지 해관에서 수입신고 수속을 처리한 후 경내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보세운송 수속을 일괄처리한다. **제22조** 중계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운송용구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국지 해관에 제출하여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1)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2) <수입화물 접속운송 통보서>(첨부6 참조).(3) 목적지 목적항 별로 분류된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적화명세서(종이서류).항공운송 방식으로 입국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복합운송 선하증권을 제출한다. **제3장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감독관리****제23조**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이 출발지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화물 해관 신고서> 전자데이터를 출발지 해관에 제출하여 출발지 해관에서 전자 신고를 사전 접수한다. 전자데이터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화물을 출발지 해관 감독관리 장소로 운송하여 보세운송 및 통관검사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을 넘긴 경우 출발지 해관은 사전신고 전자데이터를 취소한다. **제24조**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화물이 출발지 해관 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한 후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화물 해관 신고서> 전자데이터를 출발지 해관에 제출하여 전자 신고가 접수 된 후 보세운송 및 통관검사 등 수속을 처리한다.**제25조** 사전신고 또는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발지 해관에 <수출화물 해관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출발지 해관에서 수입통관수속을 처리한 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첨부7)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생성 및 출발지 해관으로 전송한다.**제26조** 사전신고 또는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의 각 호의 서류를 출발지 해관에 제출하여 수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1) <수출화물 해관 신고서>.(2) <차량 적화 등기부> 또는 <선박 감독관리부>.(3) 광둥(廣東)성 내의 육로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출국 차량 적화목록>을 제출해야 한다.**제27조** 사전신고 또는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출국지에 도착한 후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차량 적화 등기부> 또는 <선박 감독관리부>, 출발지 해관이 발급한 <수출화물 해관 신고서> 및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해관 신고서> 또는 <출국 차량 적화목록>(광둥(廣東)성 내의 육로를 통해 운송)을 지참하여 출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출국수속을 처리해야 한다.**제28조** 통과운송선하증권 보유 및 경내 운송용구로의 환적이 필요한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송화인이 출발지 해관에서 수출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한 후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국 운송용구별로 적화명세서를 분류하여 보세운송 수속을 일괄 처리한다.**제29조** 운송용구 대리인은 수출 접속운송화물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발지 해관에서 통관수속을 처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지 해관에 입력 및 제출해야 한다.(1)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2) 출국 운송용구별로 분류된 적화명세서(전자파일 또는 서면).(3) <차량 적화 등기부> 또는 <선박 감독관리부>.출발지 해관의 허가를 득한 후 <수출화물 보세운송 통보서>(첨부8 참조)를 발급 받는다. 상기 서류 심사 및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출국수속은 출국지 해관에서 처리한다.**제30조** 화물이 출국지에 도착한 후에야 출국 운송용구를 확정할 수 있거나 기존 운송용구의 명칭, 운항편, 선하증권 번호가 변경된 경우 출국지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충 입력하거나 수정한 후 출국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물량정산(核銷)**(核銷: 거래증빙과 실물을 대조확인하여 기록을 정리하는 통제과정을 말함.)**제31조**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목적지 해관 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한 후 목적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물량정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수입 대종·산적화물을 몇 차례로 나누어 보세운송하는 경우 첫번째 물량이 목적지 해관 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한 후 목적지 해관에서 전체 물량의 보세운송 물량정산 수속을 처리함과 동시에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전체 물량에 대한 수입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한다. 목적지 해관은 규정에 따라 나머지 물량의 통관검사 수속을 처리한다. 마지막 물량이 도착한 후 목적지 해관에서 전체 물량의 물량정산 수속을 처리한다.**제32조**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출국지 해관 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한 후 출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물량정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화물이 실제로 출국된 후 출국지 해관은 무결함적화명세서의 물량정산을 진행하고 물량정산 결과를 출발지 해관에 전달하며 출발지 해관은 이에 근거하여 해당 해관 신고서의 증명서류를 발급한다.**제33조** 물량정산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운송용구의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운송을 금지한다. **제5장 부칙****제34조** 이 방법에서 사용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이라 함은 :1. 입국지에서 입국한 해관에 보세운송을 신청 후 다른 해관관서로 운송되어 통관수속을 처리하는 화물.2. 출발지에서 수출 해관수속 처리 후 출국지로 운송되는 출국지 해관에서 감독관리 및 통관 허가하는 화물.3. 경내 한 해관관서에서 다른 해관관서로 운송되는 해관의 감독관리가 필요한 화물.(2) 입국지 : 화물이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개항을 의미한다.(3) 출국지 : 화물이 관세영역으로 부터 반출되는 개항을 의미한다.(4) 목적지 :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수입 통관 수속을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운송 목적지를 의미한다. (5) 출발지 :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수출 통관 수속을 처리하는 보세운송 화물 운송 출발지를 의미한다.(6) 운송인 : 해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제35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제36조** 이 방법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광둥(廣東)지역 육로운송 보세화물 감독관리 방법> 공표에 관한 해관총서의 통지>(서감[2001]21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장강 연선 수출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감독관리 방법> 공표에 관한 해관총서의 통지>(서감[2001]22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감독관리 방법> 공표에 관한 통지>(서감일[1992]1377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转关货物****监管办法**2001年9月30日海关总署令第89号发布根据2014年3月13日海关总署令第218号修改 **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了加强对转关货物的监管，方便收发货人办理海关手续，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制定本办法。**第二条** 转关货物是海关监管货物， 除另有规定外（见附件1），进出口货物均可办理转关手续。海关对进出口转关货物施加海关封志。**第三条** 转关货物应当由已经在海关注册登记的承运人承运。海关对转关限定路线范围，限定途中运输时间，承运人应当按海关要求将货物运抵指定的场所。海关根据工作需要，可以派员押运转关货物，货物收发货人或者其代理人、承运人应当按规定向海关缴纳规费，并提供方便。**第四条** 转关货物的指运地或者启运地应当设在经海关批准的监管场所。转关货物的存放、装卸、查验应当在海关监管场所内进行。特殊情况需要在海关监管场所以外存放、装卸、查验货物的，应当向海关事先提出申请，海关按照规定监管。**第五条** 海关对转关货物的查验，由指运地或者启运地海关实施。进、出境地海关认为必要时也可以查验或者复验。**第六条** 转关货物未经海关许可，不得开拆、提取、交付、发运、调换、改装、抵押、质押、留置、转让、更换标记、移作他用或者进行其他处置。**第七条** 转关货物的收发货人或者代理人，可以采取以下三种方式办理转关手续： （一）在指运地或者启运地海关以提前报关方式办理； （二）在进境地或者启运地海关以直接填报转关货物申报单的直转方式办理； （三） 以由境内承运人或者其代理人统一向进境地或者启运地海关申报的中转方式办理。**第八条** 转关货物申报的电子数据与书面单证具有同等的法律效力。对确因填报或者传输错误的数据，符合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管理相关规定的，可以进行修改或者撤销。对海关已经决定查验的转关货物，不再允许修改或者撤销申报内容。广东省内公路运输的《进境汽车载货清单》（附件2）或者《出境汽车载货清单》（附件3）视同转关申报书面单证，具有法律效力。**第九条** 提前报关的转关货物，进境地海关因故无法调阅进口转关数据时，可以按照直转货物的规定办理转关手续。**第十条** 从一个设关地运往另一个设关地的海关监管货物，除另有规定外，应当按照进口转关方式监管。**第十一条** 转关货物运输途中因交通意外等原因需要更换运输工具或者驾驶员的，承运人或者驾驶员应当通知附近海关；附近海关核实同意后，监管换装并书面通知进境地、指运地海关或者出境地、启运地海关。**第十二条** 转关货物在国内储运中发生损坏、短少、灭失情事时，除不可抗力外，承运人、货物所有人、存放场所负责人应承担税赋责任。**第二章 进口转关货物的监管****第十三条** 转关货物应当自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起14天内向进境地海关办理转关手续，在海关限定期限内运抵指运地海关之日起14天内，向指运地海关办理报关手续。逾期按照规定征收滞报金。**第十四条** 进口转关货物，按货物到达指运地海关之日的税率和汇率征税。提前报关的，其适用的税率和汇率是指运地海关接收到进境地海关传输的转关放行信息之日的税率和汇率。如果货物运输途中税率和汇率发生重大调整的，以转关货物运抵指运地海关之日的税率和汇率计算。**第十五条** 提前报关的转关货物，进口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在进境地海关办理进口货物转关手续前，向指运地海关录入《进口货物报关单》电子数据，指运地海关提前受理电子申报，货物运抵指运抵海关监管场所后，办理转关核销和接单验放等手续。**第十六条** 提前报关的转关货物，其收货人或者代理人向指运地海关填报录入《进口货物报关单》后，计算机自动生成 《进口转关货物申报单》（见附件4）并传输至进境地海关。**第十七条** 提前报关的转关货物收货人或者代理人，应当向进境地海关提供《进口转关货物申报单》编号，并提交下列单证办理转关手续：（一）《进口转关货物核放单》（见附件5）；广东省内公路运输的，交验《进境汽车载货清单》；（二）《中华人民共和国海关境内汽车载运海关监管货物载货登记簿》(以下简称《汽车载货登记簿》)或《船舶监管簿》；（三）提货单。**第十八条** 提前报关的进口转关货物应当在电子数据申报之日起的5日内，向进境地海关办理转关手续。超过期限仍未到进境地海关办理转关手续的，指运地海关撤销提前报关的电子数据。**第十九条** 直转的转关货物，货物收货人或者代理人在进境地录入转关申报数据，直接办理转关手续。**第二十条** 直转的转关货物，货物收货人或者代理人应持以下单证向进境地海关办理转关手续：（一）《进口转关货物申报单》；广东省内公路运输的，交验《进境汽车载货清单》；（二）《汽车载货登记簿》或者《船舶监管簿》。**第二十一条** 具有全程提运单、需换装境内运输工具的中转转关货物，收货人或者其代理人向指运地海关办理进口报关手续后，由境内承运人或者其代理人，批量办理货物转关手续。**第二十二条** 中转的转关货物，运输工具代理人应当持以下单证向进境地海关办理转关手续：（一）《进口转关货物申报单》；（二）《进口货物中转通知书》（见附件6）；（三）进口中转货物的按指运地目的港分列的纸质舱单；以空运方式进境的中转货物，提交联程运单。**第三章 出口转关货物的监管****第二十三条** 出口提前报关的转关货物，由货物发货人或者其代理人在货物未运抵启运地海关监管场所前，向启运地海关填报录入《出口货物报关单》电子数据，启运地海关提前受理电子申报。货物应当于电子数据申报之日起5日内，运抵启运地海关监管场所，办理转关和验放等手续。超过期限的，启运地海关撤销提前报关的电子数据。**第二十四条** 出口直转的转关货物，由货物发货人或者其代理人在货物运抵启运地海关监管场所后，向启运地海关填报录入《出口货物报关单》电子数据，启运地海关受理电子申报，办理转关和验放等手续。**第二十五条** 提前报关和直转的出口转关货物，其发货人或者代理人应当在启运地填报录入《出口货物报关单》，在启运地海关办理出口通关手续后，计算机自动生成《出口转关货物申报单》（附件7）数据，传送至出境地海关。**第二十六条** 提前报关和直转的出口转关货物发货人或者代理人应当持以下单证在启运地海关办理出口转关手续：（一）《出口货物报关单》；（二）《汽车载货登记簿》或者《船舶监管簿》；（三）广东省内公路运输的，还应当递交《出境汽车载货清单》。**第二十七条** 提前报关和直转的出口转关货物到达出境地后，发货人或者代理人应当持《汽车载货登记簿》或者《船舶监管簿》和启运地海关签发的《出口货物报关单》和《出口转关货物申报单》或者《出境汽车载货清单》（广东省内公路运输），向出境地海关办理转关货物的出境手续。**第二十八条** 具有全程提运单、需换装境内运输工具的出口中转货物，发货人向启运地海关办理出口报关手续后，由承运人或者其代理人按照出境运输工具分列舱单，批量办理货物转关手续。**第二十九条** 出口中转货物 ，其发货人或者代理人向启运地海关办理出口通关手续后，运输工具代理人向启运地海关录入并且提交下列单证：（一）《出口转关货物申报单》；（二）按出境运输工具分列的电子或者纸质舱单；（三）《汽车载货登记簿》或《船舶监管簿》。经启运地海关核准后，签发《出口货物中转通知书》（见附件8）。出境地海关验核上述单证，办理中转货物的出境手续。**第三十条** 对需运抵出境地后才能确定出境运输工具，或者原定的运输工具名称、航班（次）、提单号发生变化的，可以在出境地补录或者修改相关数据，办理出境手续。**第四章 核 销****第三十一条** 进口转关货物在运抵指运地海关监管场所后，指运地海关方可办理转关核销。对于进口大宗散装转关货物分批运输的，在第一批货物运抵指运地海关监管场所后，指运地海关办理整批货物的转关核销手续，发货人或者代理人同时办理整批货物的进口报关手续。指运地海关按规定办理余下货物的验放。最后一批货物到齐后，指运地海关完成整批货物核销。**第三十二条** 出口转关货物在运抵出境地海关监管场所后，出境地海关方可办理转关核销。货物实际离境后，出境地海关核销清洁舱单并且反馈启运地海关，启运地海关凭以签发有关报关单证明联。**第三十三条**　转关工具未办结转关核销的，不得再次承运转关货物。**第五章 附 则****第三十四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是：（一）转关货物系指：1、由进境地入境，向海关申请转关、运往另一设关地点办理进口海关手续的货物；2、在启运地已办理出口海关手续运往出境地，由出境地海关监管放行的货物；3、从境内一个设关地点运往境内另一个设关地点，需经海关监管的货物。（二）进境地：指货物进入关境的口岸。 （三）出境地：指货物离开关境的口岸。 （四）指运地：指进口转关货物运抵报关的地点。 （五）启运地：指出口转关货物报关发运的地点。 （六）承运人：指经海关核准，承运转关货物的企业。**第三十五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第三十六条** 本办法自2001年10月15日起实施。原《海关总署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海关广东地区陆路转关运输货物监管办法〉的通知》（署监[2001]21号）、《海关总署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长江沿线进出口转关运输货物监管办法〉的通知》（署监[2001]22号）、《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转关运输货物监管办法的〉通知 》（署监一[1992]1377号）同时废止。 |